

## 소방사범 수사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by Investigation Case of the Fire Crimes

채진<sup>†</sup> · 우성천\*

Jin Chae<sup>†</sup> · Seong-Cheon Woo\*

군포소방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2009. 11. 24. 접수/2009. 12. 11. 채택)

### 요 약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형사사범 분야에도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는 각 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수사업무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사범수사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소방사범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소방사범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전문수사기관의 부재, 전문 인력 부족,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담수사부서 신설, 전문인력 확보,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구축,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등이다.

### ABSTRACT

Nowadays contents of crimes a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because of differentiation and specialization of society. For this reason,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system that each special field officers investigate crimes related to their special fields is introduced to produce high quality private law service. Nevertheles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deal with fire crimes show many problems because they have less experiences and ability about investigation than general judicial police officers. Then, purpose of this study is deduction problems by analyzing cases of fire crimes and suggesting improvements which are ways to improv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s who investigate fire crimes efficiencies and professionalisms. Problems about investigation of fire crimes are absence of professional investigation agency, a shortage of professional workforce, absence of professional investigation officers education system. Improvements are creation professional investigation agency, securing experts, developing professional investigation officers education system, construction professional techniques manage system, introduction fire crime cases manage system.

**Key words :** Fire crim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of knowledge management

### 1. 서 론

특별사법경찰관리(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는 형사소송법 제 197조에 의해 고도의 전문화된 기능별, 지역, 특수 업무에 대해 전문성(Specialty)이 없는 일반 사법경찰관리(General Judicial Police Officer) 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한 관계로 전문적 지식에 정통한 행

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sup>1)</sup>

현대사회 구조는 복잡 다양해지고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형사사범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인 사법경찰의 소방, 환경, 산림 등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는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각 전문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분야에서 발생하는 범

<sup>†</sup>E-mail: korea119@gg.go.kr

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 다양화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 전문화, 다양화 되면서 그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특별사법경찰이 사법경찰의 중요한 하나의 축을 차지하게 되었다.<sup>2)</sup>

즉 형법범 등 일반적인 범죄 이외에 행정의 복지 국가적 개념의 확장을 바탕으로 각종 질서법적 성격을 갖는 행정범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의 전문성, 효율성, 신속성, 당해 행정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범죄에 대해 장소와 사항적인 제한을 두고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sup>3)</sup>

1956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6년 기준 총 13,114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전담하는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수사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출석요구, 피의자 심문 및 조서작성, 증거수집 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특이한 사건에 있어 수사업무처리를 하는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사범 수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소방사범수사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소방사범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2. 소방사범 수사의 이론적 배경

### 2.1 수사의 의의와 개념

수사(Investigation, Ermittlung)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고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며,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sup>5)</sup>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활동 목적인 기소여부의 결정과 공소의 수행을 강조하는 개념 정의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수사기능을 모두 검찰이 담당하고 있다.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인(私人)에 의한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하는 활동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조사활동과 구별된다.

수사의 개념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째, 범죄사실의 진상 혹은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이며, 둘째, 공소수행을 위한 준비단계이고, 셋째, 범죄사실에 형법법령을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이중 경찰에서의 수사는 범죄의 혐의유무를 밝히기 위하여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라고 하겠다.

### 2.2 특별사법경찰

#### 2.2.1 특별사법경찰의 의의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일반사법경찰만으로는 전문지식의 부족과 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이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각 전문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각 전문분야에 관한 범죄수사권을 특별히 부여할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가 특별사법경찰이다.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1956년 1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초기 특별사법경찰은 검찰, 소년원, 농림부 및 시·도의 산림보호 담당, 전매청, 보사부 마약담당, 등대원, 선장 및 선원 등 10여 개 부처(3~5급) 및 민간인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특별사법경찰은 1차산업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산업자원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산림보호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다.<sup>6)</sup>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 197조\*에 근거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어려운 소방,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에 대하여 수사를 할 때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제도이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위 이상 소방준감까지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전국 소방서의 특별사법경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의 전문화에 따라 그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Table 1.** The Statu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in the Field of Fire Fighting

구분	2005년	2007년	2008년
소방방재청 (소방서)	733	818	838

### 2.2.2 특별사법경찰의 특징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보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special case)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경찰청소속이 아닌 특정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특정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발견할 기회가 많고, 그 직무상 특수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직무상 특수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의 특징은 전문성, 격리성, 현장성, 보안성 등이 있다.<sup>7)</sup>

#### (1) 전문성

업무상 전문성이 요구되어 일반 사법경찰관이 효율적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소방, 환경, 삼림, 출입국관리, 근로감독, 철도, 식품·의약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 (2) 격리성

수용시설 운송수단 등 격리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단속을 위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교도소, 소년원, 보호·치료감호소, 항공기 기장, 선박의 선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3) 현장성

행정업무 수사과정에서 위반 사범의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고, 현장 단속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소방, 산림, 문화재, 어업감독, 광산보안, 국가보훈, 농약·비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

#### (4) 보안성

국가보안 등 특정한 국가정책의 수행이나 특수 분야의 수사업무를 위하여 일반 사법경찰관으로 수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고도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직원, 군 사법경찰, 대통령 경호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 2.2.3 특별사법경찰의 권한과 책임

특별사법경찰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및 법상의 직무범위 안에서 범인의 검거 및 조사, 증거수집 등을 직무로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직무로 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검사

**Table 2.** The Comparison between General Judicial Police Officer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up>8)</sup>

구분		일반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공통점	검사의 지휘·감독	받음	받음
	형사소송법 적용	받음	받음
차이점	직무범위의 제한	없음	있음
	수사관할의 제한	없음	있음
	분야별 예시	방법, 수사, 경비 등	소방, 환경, 산림 등

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196조).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일반사법경찰관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지휘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서로 결합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수사의 주체로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범죄를 수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에 힘써야 한다.

### 2.3 소방사법수사

#### 2.3.1 소방사범의 의의

소방사범의 수사라 함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제50조 내지 54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내지 51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35조 내지 38조), 위험물안전관리법(제33조 내지 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지위에서 수사를 행하고 수사의 주체자이며 종결권자인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소방관련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효과로 신체형 및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로는 형법의 개념에 포함되며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는다.<sup>9)</sup>

#### 2.3.2 소방사범의 특성

소방관련법 위반 범죄는 형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범죄의 양태 및 수법이 비교적 단

조(單調)하나 반면에 고질적이고 위반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점이 그 특성이 있다. 이는 소방관련법이 타 법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기술적인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비용의 측면으로 고려하여 직접적인 생산성과 연관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소방관련법은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sup>10)</sup>

#### (1) 범죄의 양태 및 수법이 단조

소방법 관련 범죄는 관계인의 소방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위험물의 저장취급의 안전관리, 소방시설업자의 법규준수 등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 소방관련 범죄의 양태 및 수법이 단순하고 변화가 없으며 새로운 범죄의 가능성이 적다. 또한 소방관련법 위반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 (2) 소방시설 투자를 비용의 개념으로 인식

소방시설에 대한 비용을 투자자의 개념보다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소방관련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소방안전에 대한 투자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등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3) 소방법의 규제적인 측면

소방관계법령은 규제법률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대한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유지의 의무부과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화재진압과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유지 관리하는데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따라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 (4) 소방법의 기술적인 측면

소방법령의 전문성, 기술성은 소방안전을 주관하는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성과 기술성 때문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해, 관심 등이 부족하다. 소방관련법령은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관련법을 실천하는 것에도 애로사항이 수반된다.

### 2.3.3 소방사범 수사의 기능

소방관련법령은 소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소방관련법 위반행위에 관한 소방관련법령도 일반 형법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sup>11)</sup>

#### (1) 규제적 기능

소방관련법령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관련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범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적 기능을 한다.

#### (2) 보호적 기능

소방관련법령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안녕질서 및 사회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3) 보장적 기능

소방관련법령상의 벌칙규정은 규제적 기능 및 보호적 기능에 의하여 소방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소방관련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보하고 사회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부차적으로는 소방관련법령 위반행위에 있어 벌칙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방관련법 위반자에 대하여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2.3.4 소방사범 수사의 절차

소방관련법 위반 행위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수사과정은 ① 내사 → ② 입건 → ③ 관련자 조사 및 증거수집 → ④ 수사 종결 → ⑤ 사건의 송치 순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어떤 기업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할 경우의 수사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첩보를 입수하게 되면 상급자에게 범죄 첩보 입수 보고를 하고, 현장을 조사한다든지 기타의 방법으로 첩보사실의 신빙성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전담검사에게 보고하여 지휘 및 지문을 받는다.

둘째, 행위자 또는 회사대표 등을 출석시켜 조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확정하여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사건부에 등재한다.

셋째, 현장 촬영, 시료채취 등 증거보장에 필요하거나 양형(量刑)에 참조되어야 할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넷째, 피의자의 신병을 긴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을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인치(引致)한다.

다섯째,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법정구속기간 내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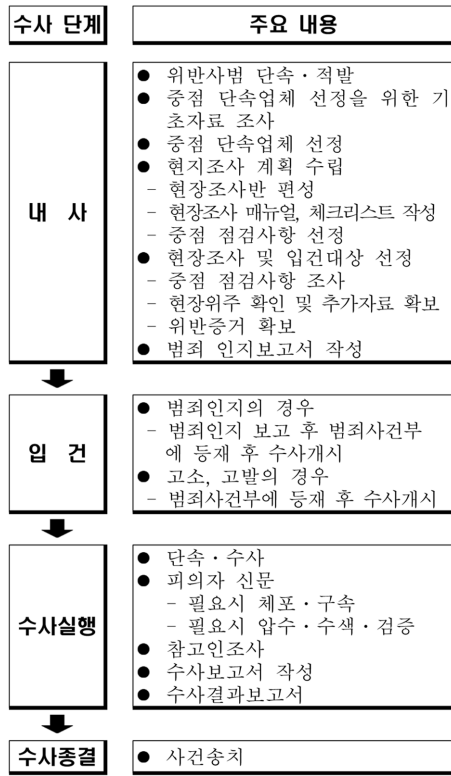


Figure 1.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fire crime.<sup>12)</sup>

수집 등 조사 완료 후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Figure 1과 같다.

### 2.4 소방관련 범죄 현황 분석

최근 5년간 소방관련법 범죄 현황<sup>13)</sup>을 살펴보면 2004년 2,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6년 1,281건, 2005년 1,118건, 2007년 1,012건 2008년 80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소방관련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준법의식이 향상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제고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Figure 2 참조).

한편 최근 5년간 시·도별 소방관련법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7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 784건, 대구 721건, 인천 543건, 경남 509건, 부산 394건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3 참조).

최근 5년간 유형별 소방관련법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관계자의 소방관련범죄가 4,0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위험물 설치자 973건, 방화관리자 595건, 기타 382건, 위험물 안전관리자 27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4 참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3권 제6호,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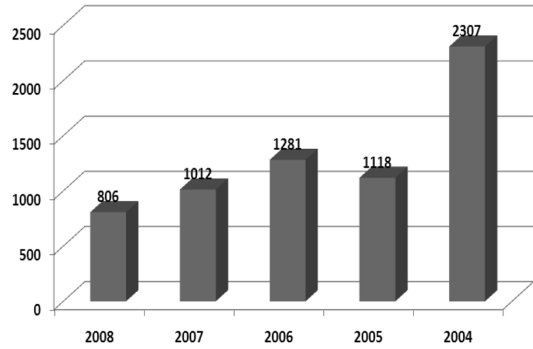


Figure 2. The status of crime relative fire fighting laws during these five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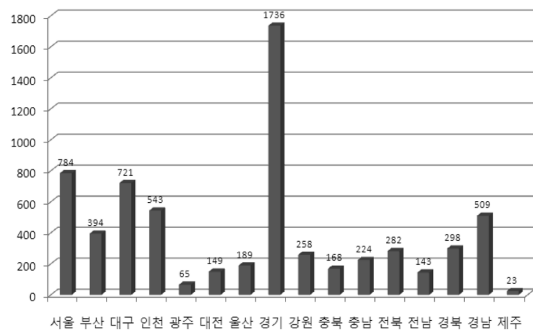


Figure 3. The status of crime by province and city relative fire fighting laws during these five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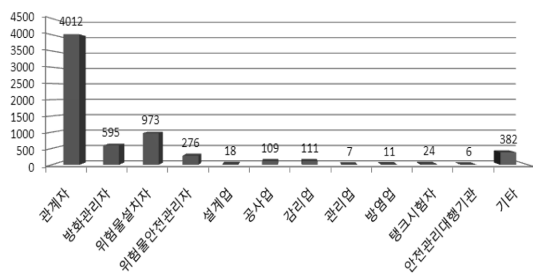


Figure 4. The status of crime by type relative fire fighting laws during these five years.

## 3. 소방사범 수사사례 분석 및 문제점

### 3.1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사례<sup>14)</sup>

#### 3.1.1 수사추진 현황

##### (1) 사건의 발단 및 수사경위

2009. 1. 16. 전화민원에 따른 현지 확인 과정에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00-0번지 소재의 “(주)○○(대표

이사 유○○)”을 방문한 결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1항에 의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저장·취급하여야 하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인 제4류 1석유류 시너 594리터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저장·취급한 것을 발견하고 수사를 착수함.

#### (2) 수사결과

상기 피의자 유 및 (주)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하고 수사하였던 바, 피의자 유은 심문조사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증거 자료 등을 조사한바 이에 부합되어 범죄협의를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함.

#### 3.1.2 수사추진 일자

- 2009. 01. 16. 유○○ 및 (주)○○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위반확인서 징구
- 2009. 01. 21. 수사착수
- 2009. 01. 16. 피의자 유○○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군포경찰서)
- 2009. 02. 05. 피의자 유○○에 대한 심문
- 2009. 02. 09. 수사결과 보고
- 2009. 02. 10 의견서 작성
- 2009. 02. 11.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 3.1.3 주요 시사점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업체를 수사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위험물 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범법행위를 방지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또한 담당자는 한차례의 진문교육을 받은 경험으로 수사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었으며 현지 확인 과정에서 증거사진 촬영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였다. 증거물 확보 사진 촬영 과정에서 증거물 채증을 방해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호신장구가 필요하였다(Figure 5 참조).

한편 심문과정에서 무허가 위험물을 2005년부터 사용했다는 진술한 바, 그 동안 소방검사를 통해 현지에서 발견이 되지 않은 점과 심문조서 마지막에 특별사법경찰관과 피의자가 날인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점이다. 담당자는 소방사범 수사를 처음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연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 3.2 무등록 소방시설공사업체 시공사례

### 3.2.1 수사추진 현황

#### (1) 사건의 발단 및 수사경위

2009. 6. 11. 소방시설공사현장 일제점검 과정에서 경



Figure 5. The evidential photo of irregularity.

기도 군포시 산본동 ○○○-○번지 소재 ○○교회 증·개축 현장의 소방시설 전기공사업체 ○○전기(주)(대표자 이○○)는 소방시설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시공·영업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함.

#### (2) 수사결과

상기 피의자 이○○ 및 ○○전기(주)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하고 수사하였던 바, 피의자 이○○은 심문조사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증거 자료 등을 조사한바 이에 부합되어 범죄협의를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함.

#### 3.2.2 수사추진 일자

- 2009. 06. 11. 이○○ 및 ○○전기(주)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위반확인서 징구
- 2009. 06. 23. 수사착수
- 2009. 06. 24. 피의자 이○○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 2009. 07. 06. 피의자 이○○에 대한 심문
- 2009. 07. 17. 수사결과 보고
- 2009. 07. 23 의견서 작성
- 2009. 07. 23.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 3.2.3 주요 시사점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과 무등록 소방공사업체를 수사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소방공사업체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범법행위를 방지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잘된 점으로는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초기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률 위반사실을 논리적으로 심문한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의자 소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화재조사업무와 수사업무의 병행에서 오는 전문가의 한계를 느꼈으며, 소방사범 수사에 참고자료가 없어 수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 3.3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대역사례

### 3.3.1 수사추진 현황

#### (1) 사건의 발단 및 수사경위

2009. 6. 11. 소방시설공사현장 일제점검 과정에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번지 소재 교회 증·개축 현장의 소방시설공사업체 (주)소방전기공사(대표자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업체 ○○전기(주)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함.

#### (2) 수사결과

상기 피의자 이○○ 및 (주)○○소방전기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하고 수사하였던 바, 피의자 이○○은 심문조사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증거 자료 등을 조사한바 이에 부합되어 범죄협의가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함.

### 3.3.2 수사추진 일자

○ 2009. 06. 11. 이○○ 및 ○○○○소방전기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위반확인서 징구

- 2009. 06. 23. 수사착수
- 2009. 06. 24. 피의자 이○○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 2009. 07. 09. 피의자 이○○에 대한 심문
- 2009. 07. 17. 수사결과 보고
- 2009. 07. 23 의견서 작성
- 2009. 07. 23.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 3.3.3 주요 시사점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과 무등록 소방공사업체를 수사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소

방공사업체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범법행위를 방지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잘된 점으로는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초기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률 위반사실을 논리적으로 심문한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 3.4 주유취급소 영업중 안전관리 소홀 사례

### 3.4.1 수사추진 현황

#### (1) 사건의 발단 및 수사경위

2008. 3. 14.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주유소 인근 통신구 맨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인부 2명이 화상을 입었다는 119신고로 관할 소방대가 출동하였으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발사고의 원인은 유류의 유증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현장에서 유류누출 흔적을 확인하고 수사를 착수함.

#### (2) 수사결과

피의자 ○○○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 34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하고 수사하였던 바, 피의자 ○○○은 심문조사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증거 자료 등을 조사한바 이에 부합되어 범죄협의가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함.

### 3.4.2 수사추진 일자

- 2008. 03. 14.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통신구 맨홀에서 폭발사고 발생
- 2008. 09 05. 소방관계법 위반사실 보고
- 2008. 09. 09. 피의자 ○○○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 2008. 09 18. 피의자 ○○○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
- 2008. 10. 10. 수사결과 보고
- 2008. 10. 23 의견서 작성
- 2008. 10. 23.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 3.4.3 주요 시사점

본 사건은 사고발생 초기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이 처리했어야 할 업무를 위험물 인·허가 담당자가 개입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6개월 후 적발보고를 하여 신속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사건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다. 또한 수개월에 걸쳐 과학적 증거가 채집되었고, 결국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가결과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토양오염 결과보고서의 일부만 기록을 하여 증거확보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

### 3.5 소방사범 수사의 문제점

소방사범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전문 수사부서의 부재, 전문수사인력 부족,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부재,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미흡, 소방사범 수사자료 발간미흡 등이다.

#### 3.5.1 전문수사부서 부재

전국 대부분의 일선 소방서의 소방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화재조사팀에서 화재조사와 소방사범 수사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2008년 화재발생은 총 10,920건, 소방사범은 총 806건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조사 분야도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조사 분야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화재조사업무와 소방사범수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 3.5.2 전문수사 인력 부족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 수사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수사기법 부재와 각종 서류 작성법 등 전문수사 인력으로서의 자질이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긴급체포, 체포영장 처리,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처리 절차에 미숙하여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sup>15)</sup>

#### 3.5.3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부재

소방서의 특별사범경찰관리의 수사 및 업무처리능력은 소방서별로, 개인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일반사범경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피의자 조사, 증거수집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방학교의 소방사범 수사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에 있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프로그램 등이 없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 3.5.4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미흡

수사의 목적은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고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며,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소방사범을 수사함에 있어 인적증거도 중요하지만 현장촬영, 시료채취 등 물적 증거가 유죄증명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동안의 소방사범수사 노하우를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 3.5.5 소방사범 수사자료 발간 미흡

소방사범 수사기법에 관한 업무매뉴얼이 정리되지 않고 범죄유형별 수사기법의 자료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여 소방분야의 특별사범경찰관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방사범 수사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축적된 범죄인지, 피의자 심문, 송치방법 등 법령별·유형별 위반행위에 대해 사건인지에서 송치까지 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 4. 소방사범수사의 개선 방안

소방사범 수사의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실무담당자의 고충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전담수사부서 신설, 전문인력 확보,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구축,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소방사범 수사자료 발간 등이다.

### 4.1 전담수사부서 신설

특별사범경찰은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일반사범경찰만으로는 전문지식의 부족과 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이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각 전문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범죄수사권을 특별히 부여할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이다.

일선 소방서의 특별사범경찰관의 업무는 화재조사팀에서 화재조사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특별사범경찰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 소방사범 수사의 수요가 많지 않아 각 소방서에 전담부서의 설치는 조직편제 상 어려울 수 있으나, 권역별(3~4개소방서)로 전담부서의 신



설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소방본부에 소방사범 수사 지원팀을 신설하여 각 서의 소방사범 수사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 4.2 전문 인력 확보

전문성이라 함은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조직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한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 시킴으로써 조직 관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조직의 상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현대행정의 주요한 질적 특징은 행정의 전문화라 할 수 있다.

소방사범을 수사하는 소방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긴급체포, 체포영장 처리,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처리 절차에 미숙하여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사범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보직도 관리하여 소방사범 수사 업무에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수사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범죄수사 실무경력자를 특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채용된 전문 인력을 위해 소방사범 수사전문 학습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학습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4.3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소방사범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각 소방서에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 수사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에 있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검찰청과 경찰청에 위탁하여 소방사범 수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무연수원에 위탁하여 장기간 수사실무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업무처리에 근접하는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방사범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교육내용을 이론 강의를 최소화하고 상황처리 실습을 확대하여 실제사건과 동일한 상황처리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체계, 내용, 방법 등을 분석·토의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수사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범죄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최근 범죄동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4.4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구축

소방사범을 수사함에 있어 인적증거, 시료채취 등 물적 증거가 유죄증명을 하는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과 보직변경으로 수사업무의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사사례 및 수사방법 등의 전문적인 수사기법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사범의 중요한 사건의 경우 사건개요, 피의자, 수사의 방향, 적용된 법조, 증거물, 사건의 송치, 사건 송치 시 애로사항, 수사실패 또는 수사성공 요인 등을 요약하여 수사기법을 전산화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이한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한 경험만큼 전문적인 교육 자료로 적절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경험 등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소방사범 수사의 전문성은 제고될 것이다.

소방사범에 대한 방대한 수사경험을 자료화 하여 축적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든 소방사범 특별사법경찰관이 열람하여 사건을 처리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소방사범 수사의 전문성은 제고될 수 있다.

#### 4.5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소방사범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잦은 인사이동과 보직변경에 따른 수사경험에서 얻은 노하우 등의 단절을 막고 후임자가 전임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함으로써 소방사범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기법과 노하우, 수사경험, 각종 수사서류, 연구보고서 등 모든 수사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방사범 수사사건의 수사경험, 수사상의 문제점, 새로운 범죄동향, 수사기법의 개선책 등을 공유한다면 수사력은 한층 향상될 것이다.

#### 4.6 소방사범 수사자료 발간

소방사범 수사기법을 범죄유형별로 업무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자료를 발간 한다면 수사업무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소방사범 수사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축적된 범죄인지, 피의자 심문, 송치방법 등 법령별·유형별 위반행위에 대해 사건인지에서 송치까지 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담아야 할 것이다.

소방사범 수사매뉴얼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폭넓게 활용되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소방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더 나

아가 소방사범을 근절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 5. 결 론

현대사회의 구조는 복잡 다양해지고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사범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인 사범경찰관리가 소방, 환경, 산림 등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는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각 전문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사범경찰관을 부여받아 수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사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사범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소방사범의 수사는 소방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범경찰로 지명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지위에서 수사를 행하고 수사의 주체자이며 종결권자인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소방사범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전문 수사기관의 부재, 전문 인력 부족,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부재,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미흡, 소방사범 수사자료 발간미흡 등이다.

소방사범을 수사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과 실무담당자의 고충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전담수사부서 신설, 전문 인력 확보,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구축,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소방사범 수사자료 발간 등이다.

소방사범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 소방사범 정책을 추진하고 제약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내 가치체계와 행태의 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지지가 있다면 소방사범 수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둘째, 특별사범경찰의 전문성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경험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신설과 우수 직원을 배치하여 장기 근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순환보직은 소방사범 수사업무의 연속성과 조직학습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 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범죄수사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범죄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최근 범죄동향을 학습하는 등 소방사범 수사의 전문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소방사범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기법과 노하우, 수사경험, 각종 수사 서류, 연구보고서 등 모든 수사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상 소방사범 수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수사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사범을 수사하는 특별사범경찰에 대한 자료의 부족과 3건의 사례를 통한 분석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연구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많은 사례분석과 소방공무원의 인식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p.181(2008).
2. 이상정, S/W저작권과 관련한 친고죄와 단속권에 관한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pp.91-93(2001).
3. 민형동, 특별사범경찰의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p.37(2007).
4. 법무부, 국회2007년 국정감사 요구자료(최병국의원), pp.3-7(2007).
5. 이재상, 전계서, p.179(2008).
6. 환경부, 환경사범경찰 특별교육 교재, 환경부, p.423(2005).
7. 환경부, 전계서, p.425(2005).
8. 도정석, 철도산업 치안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2006).
9. 경기소방학교, 소방사범실무, p.97(2008).
10. 경기소방학교, 전계서, p.97(2008).
11. 경기소방학교, 전계서, p.98(2008).
12. 환경부, 전계서, p.423(2005).
13. 소방방재청, 예방소방행정통계, 삼진기획(2004, 2005, 2006, 2007, 2008).
14. 군포소방서, 소방사범, 내부자료(2009).
15. 민형동, 전계서, p.61(2007).